

권리·의무 승계신고서

※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, 어두운 란(■)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7일
신청인	① 성명(법인명)	② 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)
	③ 주소	전자우편
	④ 전화번호	휴대전화번호
신청내용	⑤ 사도의 허가번호	
	⑥ 사도의 위치[시점(始點) 및 종점(終點)]	
	⑦ 사도에 관한 권리·의무의 내용 및 취득 근거	
	⑧ 사도에 관한 권리·의무의 승계 사유	

「사도법」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도의 권리·의무의 승계를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승계받는 자 (서명 또는 인)
승계하는 자 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도지사
특별자치시장 귀하
시장·군수·구청장

첨부서류	권리·의무의 승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	수수료 없음
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

유의사항

근거법률	사도에 관한 권리·의무를 승계한 자는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(「사도법」 제11조).
<p>1. 사도개설자가 지위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인이 종전 사도개설자의 권리·의무를 승계합니다(「사도법」 제11조제1항제1호).</p> <p>2. 사도개설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종전 사도개설자의 권리·의무를 승계합니다(「사도법」 제11조제1항제2호).</p> <p>3. 법인인 사도개설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그 권리·의무를 승계합니다(「사도법」 제11조제1항제3호).</p> <p>4. 권리·의무를 승계한 자는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(「사도법」 제11조제2항).</p> <p>5. 권리·의무를 승계한 자가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(「사도법」 제17조제1항제2호).</p>	

작성방법

- ①란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.
- ⑤란은 사도의 허가를 받았을 때 허가번호를 적습니다.

신청안내 및 처리절차

신청하는 곳	특별자치시, 특별자치도, 시, 군, 구	담당부서	도로 건설 관련 부서(도로건설과 등)					
신청서 작성 신청인	→	접수 특별자치시, 특별자치도, 시·군·구	→	검토 특별자치시, 특별자치도, 시·군·구	→	결재 특별자치시, 특별자치도, 시·군·구	→	신고 수리